

719
P228

UN 인권소위원회 참석 활동 일정

참석자: 이효재 공동대표
황금주 할머니
신혜수 국제협력위원장
정진성 정신대 연구회장

8월 9일 신혜수 국제협력위원장 제네바 도착.

10일 오전 11시에 의제 16: "현대형 노예문제 (Contemporary Forms of Slavery)"에 관한 회의시 정신대문제의 실상과 일본의 책임, 정대협의 요구등을 담아 발언 (발언원고, UN Press Release 자료 별지).

11일 한국 대표부 문봉주 참사관, 조현동 2등 서기관, 도즈까 변호사와 점심.

14일 의제 16에 관한 결의안이 소위원회에서 통과됨. 결의내용중 정신대 관련부분은 "전쟁중 매춘을 강요당한 여성들의 실태에 관해 인권소위와 실무회의에서 입수한 정보를 배상문제 담당 특별 조사관에게 제출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하기로 함.

16일 제네바한인교회 (박성원목사 시무) 에서 정신대문제에 관한 강연 (정대협 후원금 SFr.300 받음).

이효재 공동대표, 황금주 할머니, 정진성 정신대연구회장 도착.

17일 일본 사회당 모토오카 참의원의 초대로 점심식사.

18일 오전 11:15부터 30분간 Press Room II에서 기자회견.

- * 내용: 1) 황금주 할머니의 증언
- 2) 정대협에 신고된 자료를 중심으로 전체실태보고
- 3) 우리의 요구등을 이야기하고 질문 받음

* 참석 언론: 미국 ABC, 일본 時事통신, 共同통신, 요미우리 신문, 기타.

* 기자회견후 미국 ABC 기자와 30분간 인터뷰.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 기자회견과 비슷한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일본에서 온 강제노역 조사단 대표팀의 보고도 포함되었음. 민간단체 뿐만 아니라 언론 및 정부대표 (한국과 북한대표부를 포함한 5개국)도 포함하여 90여명참석 (별지 행사 안내서 참조).

20일 의제 4: “심각한 인권침해의 희생자에 대한 배상문제 (Compensation for victims of the gross violations of human rights)”의 특별 조사관인 반 보벤 교수 (Prof. Theo van Boven—현재 네델란드 Limburg 대학의 법학교수이며, 네델란드 외무장관과 UN 인권센터의 소장 역임) 에게 정신대 문제에 대한 지원을 호소. 정신대 문제에 관한 조사를 할수 있도록 반 보벤 교수를 한국으로 초청, 북한도 같이 방문한다는 전제하에 수락함 (방문 예정일: 12월 12일-15일).

21일 한국 대표부 김삼훈 부대사 초대로 점심식사.

의제 4에 관한 회의에서 반보벤 특별 조사관이 보고하면서, 한국 정신대 문제에 관해 입수하는 모든 정보를 앞으로 작성할 보고서에 반영하겠다고 강력한 지지를 표명 (녹취 자료 별지).

의제 4에 관해 NGO중 첫번째로 이효재 교수가 발언. 일제의 성적 노예의 희생자인 정신대에 대한 일본의 배상책임과 근로 정신대 문제도 제기, UN 인권소위에 4개항을 요구 (별지 자료 참조). 앞으로 3개의 NGO들이 정신대 문제를 제기할 예정.

22일 제네바 출발

23일 한국 도착

* 기타 참고 사항 *

1. 의제 16에 관해 8월 7일 한국 정부 대표부, 북한 대표부 및 민간 단체중 IED (International Educational Development, Inc.), IAF (International Abolitionist Federation), ASI (Anti-Slavery International) 등이 정신대 문제에 대해 발언.
2. 이에 대해 일본 정부대표가 8월 10일 발언 (원고 별지).
3. 의제 4에 관해서도 IED, Liberation, War Amputations of Canada 등의 민간단체가 발언할 예정으로 되어 있음.
3. 회의는 8월 3일 - 28일까지이며, 월요일-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오후 1시, 오후 3시-6시까지 개최. 일정이 지연되어 19일과 20일에는 저녁 9시까지 연장회의.
4. 의제마다 특별 조사관, 또는 Secretariat의 보고후 소위원회, 국가 대표, 국제기구 (WHO, IMF, ILO등), 민간단체의 순으로 발언하며, 소위원회는 언제든지 발언할 수 있음. 발언 시간은 소위원회 (전문가) 35분, 국가 대표 20분, 민간단체 10분이며, 소위원회는 언제든지, 국가대표는 해당사항이 있을때 (right of reply) 발언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는 한 의제에 대해 한번씩만 발언할 수 있다.

UN 인권위원회, 소수인종차별금지 및 보호 소위원회, 제 44회기

의제 4: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보상

구두발언: 세계교회협의회 국제위원회

8월 21, '92

박영자 이원진

세계교회협의회(이하 WCC로 칭함)는 "종군위안부문제", 즉 일본에 의해 성적 노예로 강제된 다수의 나이 어린 한국여성의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발언할 기회를 준 데 감사한다. 여기에 동석한 황금주씨는 이 참혹한 인권유린의 피해자이다.

WCC, IED 및 다른 NGO들이 이미 이 여성 및 인권에 대하여 국가가 행한 역사에 유례가 없는 범죄에 대해 고발한 바있다.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전쟁중에 매춘을 강요당한 여성의 상황에 대한 모든 정보를 특별조사관에게 제출하도록 한 본 소위원회의 결정에 WCC는 감사한다.

성적 노예화의 피해자는 인권 및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인정되어 보상, 배상 및 재할의 권리를 가질 수있다고 이 문제의 특별조사관은 보고하고 있다. WCC는 한국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으로 약칭함)가 일본정부에게 이 피해를 효과적으로 보상할 것을 요구하는데 강력한 지지를 보내는 바이다.

1990년 11월 한국의 여성운동 지도자들이 조직한 정대협은 일본정부가 국제적 관례에 따라 이 심각한 인권침해에 적절한 해결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정부에 대한 정대협의 가장 일차적이고 중요한 요구는 철저한 조사를 행할 것과 일본군의 개입 및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이 일이 있는지 50년이 지난 지난 1월야 한 대학교수가 주요정부문서를 발견, 폭로함에 따라 비로소 정부의 개입을 인정하였다. 그 결과로 지난 7월 6일 일본정부는 일차적 조사결과를 발표하였고, 여기서 처음으로 정부의 체계적 개입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정부보고서는 생존의 피해자의 경험 및 증인을 철저히 간과했으며 민간 연구자들의 여러 연구결과 및 관계자료를 무시하였다. 일본정부는 부당하게 위안부를 강제 동원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우기 본 소위원회에서 8월 10일에 있었던 일본대표의 구두발언은 일본정부가 보상의 법적 책임이 있다고 하는 주장을 되풀이 하였다. 그는 "일본정부는 법적 논의와 별도로 아픔과 고통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우리의 깊은 마음을 전할 최선의 방법을 고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1965년 한일조약에서 배상문제는 종결되었다고 하는 일본정부의 주장은 옳지 않다. 그것의 부당함은 이미 8월 7일 의제16에서 발언한 IED의 보고에서 주장된 바있다. WCC는 IED의 다음의 입장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한국의 어린 여성을 성적 노예로 강요한 일본정부의 행위는 인도에 대한 죄, 노예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침해 및 일본이 1932년에 조인한 강제노동금지법에 대한 침해이다.

WCC는 심각한 인권침해의 또다른 측면을 제기하고자 한다. 많은 한국여성은 군수산업의 노동에 강제로 동원되었다. 성적 노예화의 희생자들은 군수산업의 노동을 위한 동원이라는 명목으로 징발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여기 있는 황씨도 그 경우이다. 한국 전역에서 12-3세의 소녀들이 학교를 통해, 면사무소를 통해 징발되어 공장으로 보내졌다. 그 전체규모는 밝혀지고 있지 않다. 이들 소녀 중 많은 부분이 성적 노예로 강요되기도 했다. 대부분의 일본의 공장들은 이들의 도주를 막기 위해 임금 강제로 지속시켰으며 그것은 지금까지 이들에게 돌려 주어지지 않고 있다. 이 강제지속의 기

인 규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자료들로 인하여 일본정부는 위안소에의 개입을 부정해 왔던 그간의 태도를 변경하고 1992년 7월 6일의 발표에서 위안소정책에 군이 관여했음을 공식적으로 시인하였다.

그러나 이 발표에서 일본정부는 위안부의 강제언행을 밝히는 문서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생존의 피해자와 요시다 세이지를 비롯한 동원 관계자들의 생생한 증언으로 강제 및 납치, 그리고 사기에 의해 이들이 동원되었음은 명백한 사실로 되고 있다.

소위원회에 대한 요구

정대협은 일본정부에게 종군위안부문제에 대해 피상적이 아닌 철저한 조사를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에 기초하여 그들의 진실한 사죄의 표현으로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배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대협은 또한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역사교과서에 그것을 기록하며, 추모비를 세우도록 촉구하고 있다. 한국정부도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 8월 10일에 서울에서는 유사한 피해를 당한 아시아 6개국의 대표들이 모여 연대회의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대협은 본 소위원회가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소위원회가 한국 및 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당한 성적 노예화에 대하여 강한 결의를 할 것을 바란다. 둘째, 소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결의에 포함시킬 것을 바란다.

1. 인권위원회와 UN의 관계 기관들이 종군위안부문제에 주목할 것.
2.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팀을 만들어 아시아의 성적 노예화의 희생자들에 대한 조사를 말도록 할 것.
3. 소위원회가 관계자료를 이 문제에 관련된 정부와 NGO들에게 보낼 것.
4. 특별조사관은 이 심각한 인권침해의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과 배상에 대한 참고 지침을 준비할 것.
5. 소위원회는 인권위원회로 하여금 배상문제에 대한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할 것.
6. 이러한 조치들이 인권위원회에 보고되도록 할 것.

의제 16: 현대형 노예문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구두발언: 세계교회협의회 국제위원회

8월 10일, '9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세계의 300여 교회를 대표하는 세계교회협의회(WCC로 칭함)는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본 소위원회에서 발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종군위안부"문제는 1932-45년에 일본군에 의해 성적 노예화를 강요 당한 20만 한국여성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또한 다른 아시아 여성도 문제 삼는다: 일본정부는 중국,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지에서도 위안부를 동원했음을 밝히고 있다.

성적 노예화의 실상

많은 일본의 정부 및 군대 문서들이 패전 후 파기되었고 피해자 및 군관계자들도 다수 죽었으므로 이 심각한 인권의 피해의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그간의 연구와 발전된 자료 및 피해자와 군관계자들의 증언에 기초하여 정대협은 피해자의 수를 20만정도로 보고 있다. 가장 최소로 보는 일본의 한 추계도 8만으로 추정하였다.

정대협은 신고전화를 설치하고 생존의 전위안부들의 신고를 권유하고 있다. 200명이 넘는 위안부 및 근로정신대의 피해자가 그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해 왔다. 한국정부도 신고를 받아 390명의 위안부와 근로정신대가 접수되었고 그중 155명이 위안부로서 74명의 생존자를 포함하고 있다. 1992년 5월에 생존의 전위안부들은 무궁화 자매회라는 자치조직을 만들어 매달 모임을 가지고 있다.

한국정신대연구회에서 심층면접을 한 30명의 전위안부 중 반정도는 공장에 취업시켜준다는 속임에 빠져 동원되었으며, 나머지 40%는 일본군이나 헌병에 의해 강제로 끌려갔다. 이들은 만주, 중국, 비마, 남양군도 및 일본과 한국내의 일본군대가 있는 모든 곳에 배치되었다.

위안부들은 천황이 내린 하사품으로서 그리고 소모품으로 취급되었다. 이들은 조그만 칸막이 방에서 하루 평균 3-40명, 많을 때는 100명의 군인을 상대하였다. 정기검진이 군의관에 의해 시행되고 606호라는 주사가 놓아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위안부들은 성병에 걸렸고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죽어갔다. 도주를 시도하거나 반항할 경우 잔인한 구타와 심한 경우 죽임을 당했다. 정대협에 신고한 대부분의 전위안부들은 위안부시절에 입은 상처와 병으로 지금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다. 패전시 일본군은 위안부들을 유기하거나 사살하고 도주하였다.

일본정부와 군의 관여

최근 발굴된 일본군의 문서들은 위안소의 설립과 통제에 군이 직접적으로 관여했음을 확실히 밝히고 있다. 일본군은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성병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안소를 설립하고, 위안소의 사용시간, 요금등의 구체적

특을 많은 공장들이 아직도 보유하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1965년 조약으로 그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성적 노예화와 강제 노동의 희생자들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WCC는 본 소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는 바이다:

1. 일본정부로 하여금 이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행하도록 촉구할 것.
2. 일본정부 및 다른 관련 정부로 하여금 모든 관계 정보를 '심각한 인권침해의 희생자들의 보상, 배상 및 재활의 권리' 부문 특별조사관에게 제출하도록 촉구할 것.
3. 일본정부로 하여금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 및 그 가족들에게 완전한 배상을 하도록 촉구할 것.
4. 일본정부가 한국노동자의 임금과 지축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로 하여금 적절한 보상을 할 것을 지시하도록 촉구할 것.